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의 실태분석*

공 미 희**

本稿では、近代釜山に浸透した日本漁業者を人的移動の媒介に基づき、通漁民と移住漁村に分類し、日本が朝鮮への漁業進出とともに、ますます日本の漁業基地を拡大し、朝鮮海及び朝鮮漁業を支配して植民地化していく実態を分析した。

近代日本は日本の漁業者に有利な漁業関連条約を締結し、朝鮮沿海と内水面の漁業権まで侵奪した。その結果、漁撈行為をしにくる通漁民が急増した。彼らは主に西日本に位置し、釜山近海での漁撈行為はもちろん、魚類販売にまで商圏を広げ、朝鮮人の漁場及び流通機関を侵奪した。そして日露戦争が勃発すると軍用食糧補給地として朝鮮に移住民漁業根拠地を建設し、釜山にも影島をはじめ、大辺、竜堂、下段、多大浦などで移住漁村が形成されるようになった。当時、釜山に浸透した移住漁村の実態について、日本政府の移住漁村への支援内容、日本人の職業的特徴や経済的活動内容、及び日本人社会団体の様相に関する歴史的資料に基づき、日本政府の植民地政策との関連性を分析した。

その結果、釜山の移住漁村は日本政府の指示により各府県および水産団体が補助奨励金を支援して日本漁業者を朝鮮に移住させ、日本の漁民が朝鮮における権力を拡大させ、朝鮮を侵略しようとする策略が強かっ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戦争時は移住漁村で漁獲された水産物が日本に運ばれ、軍需食品調達のために用いら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キーワード：日本の漁業者、通漁民、移住漁村、近代、釜山、水産物、植民主義(일본어업자, 통어민, 이주어촌, 근대, 부산, 수산물, 식민주의)

1. 들어가며

일본인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연근해에 불법적으로 침입해서 어업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학국플러스사업단 연구교수, kongmihe@pknu.ac.kr

행위를 해 왔으며, 이런 일본어업자들의 불법적인 밀어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행위는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기 전까지 지속되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본격적으로 조선의 자산을 강탈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산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1883년에 전라도·경상도·강원도·함경도 연해에 일본인을 위한 어업권을 갖기 위해 「在朝鮮国日本人通商章程」을 체결하였고, 또한 1889년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을 조인하여 양국해안 3해리 이내에 통어하는 어선에 대한 통어수속·어업세·포경 허가·단속규칙 등을 정했다. 1897년 원양어업장려보조법이 발표되면서 조선해 침식의 발판이 되었으며 1900년에는 경기도 연안까지 일본인 통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2년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결성한 다음 그 본부를 부산에 두어 조선해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장했다. 1904년 러·일 전쟁 때에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켰으며 충청도·황해도·평안도까지 어업권도 획득함으로써 실제로 한반도의 전 수역이 일본인의 통어구역으로 되었다. 그리고 1908년에는 한일어업협정법을 맺어 일본어민이 한국어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수면에서까지 어로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침략적 정책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어가는 환경이 조성되자 일본통어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어업이민도 이주어촌까지 건설하여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어로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청·일, 러·일 전쟁 후 조선해안에 출어하는 일본어업자들은 군수식품조달에의 협력과 동아(東亞)정책의 관점에서도 조선에서의 이주어촌 건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본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요시다 케이이치(吉田敬市(1954))는 분석하였다. 일본어업자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한 배경은 초기에는 일본국내에서 어업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인구는 늘어났지만, 어획할 수 있는 어장이 감소하면서 근해지역 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어장이 바로 조선해였다. 여기에 개인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출어한 일본어업자도 있었지만, 일본정부의 지시로 각 현이나 수산단체가 어업자들에게 장려금까지

지불하면서 조선해 진출을 유도하였다. 또한, 조선해 연관 어업조합 설립 규정을 만들어 부산에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를 조성해 부산은 물론 조선에서의 일본 어업세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수산자원을 침탈하여 군수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럼 근대 부산은 일본인 부산수산회사 및 조선어업협회가 설립되는 등 어업활동의 중요거점으로서 일본어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한 도시이다. 따라서 일본어업자의 침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침탈과정과 이주어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한, 일본인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인어민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일본어업자의 침투에 관한 연구로서, 이원순(1967)은 한·일 양국간의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항기 일본인어업의 침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金在瑾(1994)은 개항이후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연근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각종 조약을 체결해 어업권을 획득했음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학(1995)은 일본의 어업침투의 과정과 어업행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한국정부와 어민의 대응에 관해 분석했고, 송희선(2004)은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그리고 김수희(2011)는 조선어장의 식민지화과정에서 제국주의 성격에 관해 검토했고, 안영수 외(2012)는 일본의 어업침투를 개항기, 어업령 및 조선어업령 제정기로 나누어 일본의 어업침탈 과정을 분석해 권현망어업의 변천사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인 이주어촌의 침투에 관한 연구로서, 요시다 케이이치(吉田敬市(1954))는 일본인의 조선해안 출어와 그 성격 및 통어시대의 조선해안 어업 개발과 이주어업의 건설 등에 대해 분석했고, 여박동(1994)은 식민지시대 통영과 거제도의 일본인 어업이민을 위해 건설된 이주어촌의 형성경위에 대해 고찰했다. 그리고 김수희는 일본인 어민의 어업근거지건설계획이 일본인 집단이주에 미친 영향 분석(2005a)과 고등어를 둘러싼 일본인 이주어민과 어업자본가의 동향에 대한 검토(2005b)가 있었으며, 김승(2010)은 부산지역 이주어촌의 현황 및 한국인어촌의 관계, 이주어촌의 경제활동 등에 대해 분석¹⁾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어민의 조직화에 대

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김수희(2004)는 일본인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인어민의 조직화를 국가가 직접관리 했으며 어민활동지원 등 일본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어장의 식민지화를 획책했다고 기술했다.

이상과 같이 근대 이후 일본어업자들이 조선해안을 침투해 조선어장을 침탈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본어민이 조선해를 침입해가는 과정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동북아해역의 주요도시이고 일본인 어민의 중심거점인 부산에서의 인적이동의 매개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제국주의 정책의 실현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어업자들이 조선에 침투해가는 양상을 통어민과 이주어촌의 형태로 분석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연근해 및 조선어업을 지배해서 식민지 및 제국주의화해가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2. 통어민의 침투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조약들을 체결했다. 1883년 「在朝鮮国日本人通商章程」(약칭 朝日通商章程) 결과, 제 41관에 의해²⁾ 일본은 전라·경상·강원·함경의 4道 연안어장 즉,

1) 부산 이주어촌에 관한 연구로서는 대표적으로 김승(2010)을 들 수 있다. 慶尙南道(1921)와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의 사료분석에 근거한 결과, 이주어촌 형성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적이동의 바탕위에서 일본어민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부산의 어장 및 수산물이 점점 장악되어 식민지화 및 제국주의화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일본이 주어민과 조선어민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 계약관계를 형성했다는 김승(2010)의 주장에 대해, 본고는 당시 일본서민이 ‘폴뿌리 식민지지배’의 일본정책에 이용되었던 만큼 다소 합리적 계약관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본어민은 일본정부의 의도 하에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기여한 식민지의 주체로서 전개했다.

2) 在朝鮮国日本人通商章程, 第四十一款
准日本国漁船 於朝鮮国全羅慶尙江原咸鏡四道海浜 朝鮮国漁船 於日本国肥前筑前

동해안 및 남해안의 전해역과 대략 북위 36도선 이남의 서해안을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탈취했다. 반면, 조선의 어선들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치쿠젠(筑前), 이와미(石見), 나가토(長門), 이즈모(出雲), 쓰시마(對馬島) 등의 연해에 오가면서 어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상호평등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조선 어민들은 황폐된 일본 연안 어장에서 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어업이 전근대 어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해역까지 진출해서 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본어민의 일방적인 진출을 합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1889년에 조인된 「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약칭 朝日通漁章程)은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양국해안 3해리 이내에 통어하는 어선에 대한 통어수속·어업세·포경 허가·단속규칙 등을 결정한 것이다. 즉, 양국의 연안 3해리 이내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양국어선은 상대국 관계 관청으로부터 어업면허장을 받아야 했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확정된 국제법이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 적용³⁾시킨 것은 조선의 영해를 3해리로 인정시켜 합법적인 절차로서 어로행위를 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싶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상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하에 침략적으로 조선해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획물은 상대국 해안지방에서 판매 가능했다는 내용도 조선어민들의 어획물이 일본을 건너가는 경우는 드물었고, 일본인이 주로 통어를 목적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다면, 일본국의 이익을 위한 계획된 책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민들은 조선해에서의 어획물을 세금 없이 부산수산시장에 판매를 하여 많은 수익

石見長門出雲對馬海浜 往來捕漁 但不准私將貨物貿易 違者將本貨入官 壳買其所獲魚類 不在批例 至其批例納漁稅 及其他細目 遵遵行兩年後 核其 情況 更行行妥議酌定」, 박구병(1967) 「개항 이후의 부산의 수산업」, 『항도부산』6권,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p.349; 박구병(1974) 「이조말 한일간의 어업에 적용된 영해 3해리원칙에 관하여」, 『경제학연구』22, 한국경제학회, p.23.

3) 新川伝助(1958) 『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発達』 東洋經濟新聞社, p.37.

금을 챙겼고, 제 2조 어업세도 부당하게 과소책정된 것이었다. 당시 연해에서 조업한 일본 잠수기 어선 1척 당 실수입이 보통 340~350원에 달했다. 그런데 10명 이상인 경우는 10원, 5명~9명 사이는 5원, 4명 이하는 3원으로 실제 수입에 비해 얼마나 적게 적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⁴⁾ 아울러 각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어획물 몰수와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아주 약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시 일본인이 조선으로 통어를 하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朝日通漁章程」의 처벌권에 대해서도 일본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한 조선인은 일본 국내법에 따라야만 했고, 반대로 일본인은 치외법권으로 그들의 영사 재판에서 처벌하기로 되어있는 불평등 협정 등은 일본인들이 유리한 조건들만 제시해 놓고 조선의 연근해를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하게 협정됨에 따라 일본 통어자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조선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일본어업자의 침투는 두 가지 형태였다. 하나는 1년에 4회 정도로 일본에서 조선근해까지 찾아와서 어획활동을 한 통어민(通漁民)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아예 정착해 어획활동을 한 이주어민(移住漁民)이었다. 통어란 일본어민이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조선연안에 계절적으로 출어(出漁)한 출가어업을 말한다.⁵⁾ 주로 서일본의 통어민들은 개항기까지는 밀어로서 불법적 출어를 했지만 개항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조선해의 수산자원을 침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본어업자의 침투과정에서, 동북아해역의 주요도시인 부산에 대한 일본인의 인적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30년대에 아키구(安芸區) 니호섬(仁保島)의 어부 야마무라야 마사에몽(山村屋政衛門)이 대마도주로부터 자금을 대부분아 부산

4) 박구병(1967) 앞의 논문, p.357.

5) 통어(通漁)에 관해서는 吉田敬市(1954) 『朝鮮水産開發史』 下関: 朝水会, pp.159-174 참조

근해에서 도미어업에 종사했다.⁶⁾ 그리고 메이지시대에 가장 먼저 통어해온 사람은 1870년 오이타현(大分県) 사가노세키(佐賀関) 나카이에 타로우요시(中家太郎吉)가 상어어업을 목적으로 고토(五島)와 쓰시마를 거쳐서 제주도 근해에 출어한 것이다. 또 1875년 쓰시마 출신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가 해조류를 구하기 위해 조선에 왔으며, 이것이 조선의 해조류를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경우다. 그는 부산과 다대포 사이에 있었던 어장 97개 중 12개 어장을 조선인으로부터 구입했으며, 처음으로 대구, 청어 어업을 경영했다.⁷⁾ 오이케는 1888년에는 제염업을, 다음 해에는 부산수산회사 창립 등 조선수산개발에 큰 공을 세웠다. 1877년에는 히로시마현의 사카무라(坂村)와 히라카와 진자부로(平川甚三郎) 등 어업인 4명이 부산에 와서 부근의 어장조사를 했고, 1878년 3월 다시 같은 마을에서 나카히가시 죠에몽(中東丈衛門) 등 4명이 부산에 와서 상어, 도미 어로를 목적으로 어장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879년부터 낚시 입어자(入漁者)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야마구치현(山口県) 오시모우라(吉母浦)에서 닛타 스케쿠로(新田助九郎) 등 3명은 1878년 부산바다에서 거제도 방면까지 출어하여 도미 연망(延網)어업을 하였고, 같은 현 오키카무로(沖家室)섬 하라 강지로(原勘次郎)도 1879년에 부산근해에서 성적을 올린 것이 동기가 되어 이후 조선해 출어가 활성화되었다.⁸⁾ 1879년 3월 가고시마현에서 구시키노무라하마우라(串木野村浜浦)의 이마무라 타헤지(今村太平次)와 8명은 연안어장 쇠퇴 징조의 만회책으로서 고등어 어장탐험을 위해 쓰시마에서 부산근해에 출어했다. 이것이 조선해 고등어잡이 어업의 시조가 된다.

이처럼 어업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기 이전부터도 일본어민은 부산을 중심으로 밀어로 계속해서 통어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3년 「朝日通商章程」으로 인해 부산의 연해어장은 일본

6) 関沢明清·竹中邦香(1894) 『朝鮮通漁事情』 国国社書店、pp.7-8.(박구병(1967) 앞의 논문, p.352 재인용)

7)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159.

8)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160.

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이후 일본인들은 대폭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883년 가가와현(香川県)에 마쓰오카 사키치(松岡佐吉) 등 2명이 삼치류망(流網)을 가지고, 1885년에는 철망을 가지고 각각 부산근해에 출어했으며, 1887년 오카야마현(岡山県) 히나세(日生) 마을 가와사키진베(川崎甚平) 형제는 송어 건착망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발전을 했었다.⁹⁾

조선해 통어민의 대부분은 조선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자연적으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은 서일본에 중점적으로 위치해 있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영세한 어업지대로서 농경지가 부족해 정착해서 농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어획물 등의 수산자원이 부족하여 어로행위도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가가와현(香川県)은 어업자 1인당 어획고가 전국 평균 3분의 1도 안 되는 빈약한 자원인데도 어민의 숫자는 넘칠 정도로 많았다. <표 1> 부산항 총영사관에서 어업면허증을 내어준 수를 보면, 이 무렵 일본어선은 주로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에 직면해 있는 야마구치현이나 나가사키, 히로시마, 오이타현 출신이 통어를 목적으로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어민은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수산자원이 빈약한 본국을 떠나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었고, 이들은 또한 어로행위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인적이동이 이루어졌다.

<표 1> 釜山港總領事館經由漁業免許証 下付數

年度 府県別	1890年	1891年	1892年
広島県	118	269	270
山口県	209	125	155
長崎県	131	45	58
大分県	76	31	45
香川県	55	45	40

9)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160.

岡山県	57	34	38
熊本県	42	15	10
愛媛県	14	15	31
鹿児島県	2	27	14
兵庫県	7	-	5
島根県	4	4	3
福岡県	2	1	11
徳島県	-	-	1
佐賀県	-	-	1
宮崎県	1	-	-
千葉県	-	-	1
合計	718	611	683

資料: 関沢明清·竹中邦香同編 『朝鮮海漁事情』, pp.105-106.(박구병(1967) 앞의 논문, p.359 재인용)

일본정부는 조선해 어업의 개발을 단지 산업이나 경제상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1897년 법률 제 45호에 근거해 원양어업 장려보조법을 발표해 조선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 보조금을 장려했다. 또한 통어의 발전과 조선에서 일본어업자들이 통어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당시 상황을 파악시키기 위해, 농상공부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牧朴真)를 1899년 조선연해 어업시찰로 파견했다. 그는 부산, 목포, 인천 등을 시찰한 후 조선해 출어 관련의 13부현의 수산대표자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개최했다.¹⁰⁾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토지조차 및 매입 경쟁이 과열되자 조선 내 일본 어민의 어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899년 조선해통어조합(朝鮮海通漁組合)을 조직하고 5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 본부를 부산에 두어 영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본어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근대적인 큰 어

10)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p.166-167.

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러·일 전쟁이 임박해지자 조선해수산조합은 군용 식량 보급지로 거제도 장승포에 일본인 어업 근거지를 건설하였고 일본의 각 지방에서도 일본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이주어촌 건설에 나섰다.

러·일 전쟁 이후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어민들은 급속히 증가했다. 1907년 기준으로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한 어선 수 및 인원과 징수한 요금을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부산이 어선 1,597척과 세관을 통과한 어민 6,767명이었고 요금은 합계 5,706원으로 마산에 비해서도 2배 이상이었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¹⁾ 이처럼, 남해안에 통어한 일본어선은 주로 부산에서 통어수속을 밟았던 것이므로 부산이 일본어선의 왕래가 가장 잦았고 그 다음으로 마산, 목포 등을 들 수 있다. 즉, 러·일 전쟁을 계기로 통어제한구역이 전폐되고 조선의 전 수역이 일본인 어업자들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08년에는 「어업에 관한 협정」에 조인하게 했으며 이에 일본인은 통어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수면의 어업권까지 강탈한 것이다. 아래 기사¹²⁾는 당시 부산 근해 어업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다.

1911년 10월 부산시장의 어류매출은 6만 4,399엔 정도로 도미가 가장 많고 상어, 전복, 삼치, 송어, 새우, 문어, 불락이 그 뒤를 잇는다. 각 지역에서 이 시기쯤에는 일반적으로 불어(不漁)이었지만, 부산시장에서 잡히는 어획량은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해 1할 5푼 증가했다. 입어선(入漁船) 평균에서 5푼 남짓의 감소를 보았는데도 이러한 차이를 낳은 것은 월초에 정치망(定置網)으로 앞바다를 포획하고, 월말에 건저망(巾著網)으로 가을 고등어의 풍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을 거점으로 하는 어선 수는 350여 척으로 히로시마(広島), 가가와(香川), 후쿠시마(福島), 구마모토(熊本), 야마구치(山口), 도쿠시마(徳島) 각 현이

11) 第一回度支部統計年報, pp.170-171. (박구병(1967) 앞의 논문, pp.359-360 재인용)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0367호, 釜山近海漁業狀況 (1911.11.06)

그 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예망, 수조망, 고등어류망, 고등어건착망 등으로 주로 종사하였다. 어느 것도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잡힌 것의 대부분은 부산시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조선내지, 일본내지로 직접 수송한다.

위 기사는 일본 통어자들이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해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지자 부산근해까지 침입해 어로행위를 하는 서일본인의 어업활동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망(定置網)과 고등어건착망 등 발달된 어업종류도 대어를 수확하는데 한 몫을 했으며, 또 어획물을 부산시장에서 판매했다는 것은 일본어업자가 어로행위뿐만 아니라 어류의 판매 및 유통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상인들이 어류매매에 참여함으로써 어물 이전의 조선상인들이 상권을 잃고 도산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개항 후 일본 통어민들이 조선해로 진출한 배경과 부산으로 출어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메이지정부가 들어서자 제국주의로 눈을 돌려 부국강병과 식산흥업(殖産興業)정책을 실시했으며, 이에 이주정책을 펼쳐서 일본의 세력을 확장해가려는 의도가 있었다. 조선어업을 경제적 이익과 예비수군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려한 사람은 수산가 세키자와 아키키요(関沢明清)이었다. 그는 메이지초기 일본수산업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어업근대화를 목표로 조선어장과 일본근해에서 건착망과 미국식 포경업을 도입하여 시험하였다.¹³⁾ 이와 같이 서양어업 기술을 도입하여 일본의 어업근대화를 지향한 세키자와 아키키요의 수산업 발전 방향은 조선어업에 대한 장려책을 실시해서 일본제국주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책략이었다.

그는 일본어민의 조선어장 진출은 군사 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조선해는 경비상 중요한 바다임으로 이곳에서 일본 어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민들이 조선수로를 익히고 유사시 해군 수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해는 일본 해군의 예비병들을 육성시키는 곳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어업분

13) 岡本信男(1965) 『近代漁業發達史』 日本:水産史、pp.4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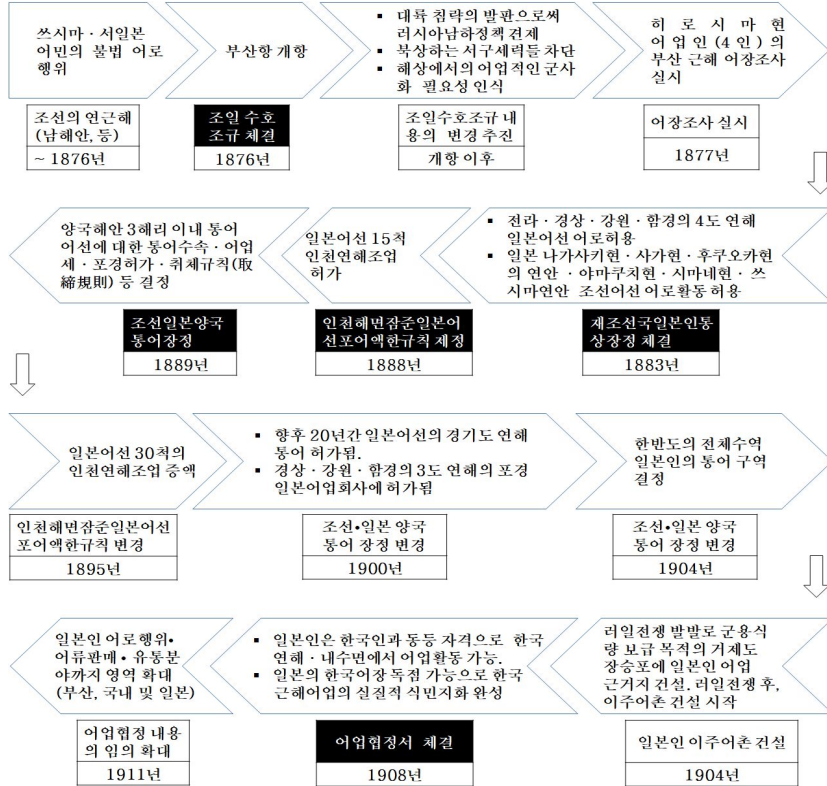
야를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삼아 불평등 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었고 또한, 조선어민보다 우월한 어구와 어선으로 조선어민의 어장을 침입해서 수산물을 획득하는 등 어업침탈 정책을 폈었다. 이런 침투해가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갈등 및 분쟁이 많이 발생¹⁴⁾ 했으며, 이에 조선 어민들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약칭 통리아문)에 상소를 올렸고 통리아문은 일본정부에 “조선어민이 어망을 설치한 곳에서는 어업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¹⁵⁾고 일본 공사에게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끝내 거절했고, 그 이후에도 일본어업자들의 횡포에 양국 어업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일본어업자들의 강탈은 조선어민들의 어로행위를 위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고 동북아 해역을 침략하기 위해 지속되었다.

이상으로 일본 통어민 침투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그림 1]에서 정리하였다. 통어민은 조선의 바다어장은 물론이고 내륙의 어장까지 침탈하는데 기반역할을 하였고,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 및 제국주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通漁規則 이전 1880년대에는 제주도에서 격화, 도서나 연안에서도 1890년대 전 반까지는 뿔나뭇과 물의 보급, 고기먹이감 보급을 위한 상륙으로 분쟁, 청일전쟁 전 1893년의 단계에서 이미 일본어민은 조선연안에서 조선인과 싸움이나 폭행 심하게는 살인사건 등을 벌여 일본영사관은 일본군의 군함을 파견했고 어민끼리의 분쟁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전국각지에서 폭발. 神谷丹路(2018) 『近代日本漁民の朝鮮出漁-朝鮮南部の漁業根拠地長承浦・羅老島・方魚津中心に』 新幹社, pp.57-59.

15) 第三三号(1888년 11월 2일) [釜山 沿岸에서의 日本人 網羅 使用 捕漁 禁止 促求 照会] 『韓日漁業關係』(日本 外務省 外交史料館 史料), 국사편찬위원회, p.62.(이영학(2003) 『개항 이후 조선인 어업의 근대화 시도와 그 좌절』 『성곡논총』34(1), 성곡언론문화재단, p.257 재인용)

〈그림 1〉 일본에 의한 조선의 어업 식민지화 과정



3. 이주어촌의 침투

일본인 이주어촌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러·일 전쟁 이전부터 개인의 생계를 목적으로 조선연안에 이주해서 정주한 자유이주어촌, 일본정부의 지시로 각 부현 및 수산단체 등이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계획적으로 건설한 보조이주어촌, 자유 및 보조지원이 결합된 이주어촌이 있다. 이주어촌의 성립동기에 대해서는 요시다 케이이치(吉田敬市(1954))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¹⁶⁾, 중

16)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p.247-248.

요한 것은 이들 이주어촌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어장과 수산업을 침탈함은 물론 일본정부의 식민지 정책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부산은 일본어민의 최대 근거지였던 만큼 이주한 일본어민의 호구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의 대표적인 이주어촌으로서는 절영도(영도), 대변, 용당, 하단, 다대포 등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인 이주어촌 건설과 지원내용,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이주어촌 이주민의 경제적 활동내용 및 이주어촌과 관련된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 현황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 식민지 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이주어촌 건설과 지원내용

3.1.1 영도

영도는 자유이주어촌으로서, 어업자의 정주지로 되었던 것은 1897년 이후이다. 1897년 1월 5일 강풍이 남쪽으로 엄습해와 풍랑 또한 심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일본인의 어선이 난파된 것이 50여척 이상에 이르렀고 그 이외 다른 어구들도 유실되어 배도 파손되었었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어민들은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부산차 선교사 주관으로 2백 엔을 모아 이것을 일본영사에게 주어 선박의 난파 등을 극복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조선어업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영도에 어민이 이주한 기원이 된다.¹⁷⁾

-
- ① 초기 통어는 거의 영세성, 왕복으로 많은 일수 소요, 어선의 조난 증가, 단일 경영이 많았기 때문에 적기에 어로불가능시 타직으로 전환이 곤란, 통어자는 대부분 장년남자로 풍기상 사회상 및 가지 문제발생
 - ② 러·일 전쟁으로 인구증가 및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등으로 대만이나 사할린으로 식민적 이주 성행 → 한반도 방면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농업이민과 상응하는 이주어촌 건설
 - ③ 청·일, 러·일 전쟁 양 전쟁 후 조선해안 출어 일본인은 군수식품조달에 협력, 東亞정책의 관점에서 조선에서 이주어촌 건설은 긴급
 - ④ 1908년 한국어업법 발표,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어장 등 중요어장이 넓게 한일 양국인에게 개방, 이방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는 한국이주자에 한해서 가능

17) 慶尚南道編(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尚南道, pp.100-101.

3.1.2 하단

하단은 보조이주어촌으로서 1908년 일본식산회사(당시 아도양패 회사(兎島養貝会社)) 출장소를 설치하고, 오카야마 현에서 다수의 장어 잡이 어부들이 도항해 장어 매수와 그 외 장어통조림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점점 일본인의 이주자가 증가했다. 1921년 당시 한국인을 고용하여 장어어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은 일본식산회사와 2명이었고 어선수는 225척으로 많았다. 더구나 일본식산회사는 하단에서 북쪽으로 약 반리의 장소(낙동강 동해안)에 수면적 4만평의 장어 양식장을 설비했다. 1912년 낙동강 입구라는 지리적조건과 바다수질의 특징으로 김 양식에 적합하다고 예상하고 하단주재 토구마타로(都態太郎)에 촉탁해 시험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과가 양호하고 색이 윤택하며 향과 맛이 좋아 동경만 아사쿠사의 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김 생산에 적합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1916년까지 계속 김 양식 축식(蓄殖)을 한 결과, 1917년부터 일본인 사이에 영리적으로 통발을 세우게 되었다. 김 양식 사업이 발흥하여 통발면적 약 8만평에 생산액은 4만엔 내외로 하단에서 유력한 산업에 이르렀다.¹⁸⁾

3.1.3 대변

대변은 자유 및 보조지원이 결합된 이주어촌으로서, 1896년 처음으로 오카야마현 히비(日比) 마을에서 삼치류망(鱒流網) 어선 10척의 통어가 있었고, 그 이후 히로시마현 바다장어 연승(延繩)어선의 통어가 있었다. 1905년에 오카야마현 삼치류망(鱒流網)어업자는 단체를 조직해 해마다 37~38척의 통어가 있었으며, 1907년경부터 오카야마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주해온 이주자가 보이곤 했다. 1908년 1월에는 후쿠오카현 치쿠호(筑豊) 수산조합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가옥을 건설해 12호를 이주시켰고, 그 후 해마다 이주민을 증가시켜 1911년까지 24호에 달했었다. 치쿠호 수산조합의 이주자는 불어

18)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93.

(不漁)와 아울러 이 촌락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1915년까지 2~3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는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당시 감독자인 이리에(入江)모씨가 해당 조합의 토지, 가옥 및 어업권 등을 양도 받아 경영했다. 그리고 통어자는 삼치류망(鱒流網)단체 외, 히로시마현 도모(鞆)마을의 바다장어 어업자단체에서 해마다 통어했었고 기타 고등어박망(鯖縛網), 고등어박류망(鯖縛流網), 삼치조조(鱒漕釣), 도미연승(鯛延繩) 등의 통어자가 점차 증가했다.¹⁹⁾

3.1.4 용당

용당은 보조이주어촌으로서, 야마구치(山口)와 오이타(大分) 양현(県)의 장려보조와 관련된 단체이주어촌이다.

야마구치어민이 조선해에 통어를 개시한 것은 1884년경부터이며 야마구치 현으로부터 장려를 받은 것은 1906년이다.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은 이주후보지로서 용당의 땅 2천백 여 평을 구입하고 이후 1907년 1월 가옥 6호 1동, 1908년 3월 가옥 6호 1동, 1909년 7월 가옥 5호 2동을 건설하여 각호에 이주어민을 수용하였다.²⁰⁾ 그리고 1910년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의 경영에 의해 같은 현의 사람이 이주해 가옥 16호와 53인이 있었다.²¹⁾ 야마구치현은 부업장려의 취지로서 밭 3정(町) 4반보(反歩)여를 구입해 본 이주어민에게 배속해 경작하도록 했으며, 가옥은 무임대로 하고 밭은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1921년 당시 야마구치현 출신의 이주민은 12명이고 감독자는 야마구치 수산조합의 촉탁에 의해 창설된 이래 사이토 쇼자부로(齋藤正三郎)가 맡아 이주어민의 감독보호에 힘썼다.

오이타(大分)현 가지마(香島) 이민단은 1914년 3월 주로 한국의 농사개발과 관련이 컸으며, 부대적 사업으로서 반농반어식 이주어촌을 경영하는 동양척식회사의 모집에 의해 이주하였다. 회사 이주

19)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p.115-116.

20)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111.

21)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韓国水産誌』第二輯, 農商工部水産局, p.528.

민 규정에 기초해서 1호 평균 8반보(反步)남짓의 소작지를 부여받았고 각자가 가옥을 건설해 영주(永住)적 요소를 구비했다. 당초 이민 11호가 1920년 말에 이르러서는 9호로 감소했는데도 이주지의 기초가 점점 견고해져갔다.²²⁾

3.1.5 다대포

다대포는 보조이주어촌으로서, 1906년 후쿠오카현 치쿠호(筑豊)수산조합에서 이주어촌 건설을 계획하여 가옥 1동 9호를 건축했고, 같은 해 6호를 이주시켜 각 호에 보조금 150엔씩을 지급했다. 기무라 츠루키치유키(木村鶴吉之)를 감독자로 지정하고 지예망(地曳網)과 호망(壺網)으로 거제도에 출어하게 되면서 이들은 다대포에 거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따라서 거처를 거제도로 옮기게 될과 동시에 일부는 고향으로 귀환하였으므로 1921년 당시 잔류하는 이주민은 3호로 줄어들었고 사실상 없어졌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주민을 수용한 가옥은 전부 부식했고 토지는 치쿠호(筑豊)수산조합의 소유로 잔류자 기무라 츠루키치유키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²³⁾

이상으로 일본이 부산에 이주어촌을 건설했을 때의 일본정부의 지시로 각 현 및 수산단체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민집단에게 특별한 정책을 실시하여 지위를 부여하고 또는 수군, 수병, 선원으로 부역시킬 우수한 어민을 손쉽게 징발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한반도로 이주하려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이주어촌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었다. 여기에 일본 서해안 지역의 황폐된 어장에서 어로생활을 하던 어민들은 조선해가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어민들 스스로가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이주하여 정주하면서 형성된 자유

22) 慶尙南道編(1921) 앞의 자료, pp.111-112.

23) 慶尙南道編(1921) 앞의 자료, 부록(附錄) p.4.

이주어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각 현에서 보조금을 받아 건설된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 보조이주어촌은 정부 및 각 부현에서 의도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이들의 이주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식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대륙침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일정의 군사적 전진기지 역할을 할 이주어촌의 건설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본 절에서는 일본이 조선에서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연근해를 중심으로 조선어업을 지배해서 식민지화 해가는 실태를 밝히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주어촌에서의 일본인의 지역출신에 대한 분석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의 인구수량과 직업적 특징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산의 주요 이주어촌에 대해 분석한다.

3.2.1 절영도(영도)

절영도의 이주형태는 자유이주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유이주 어촌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개항이전부터 일본인 거류지인 절영도 왜관이 있었고 또한, 개항 후에는 인근에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한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설립이 되어 일본인들의 왕래가 많았다. 지리적으로 부산의 출입 관문 항과 인접한 절영도가 어업 및 수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사업적 가치가 있었으므로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업적 장점으로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에 비해서 어획물의 매입가격이 놀라운 정도로 저렴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산물에 대한 기호가 많이 달랐다. 또한 인건비가 일본인보다 낮은 조선인 어부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함으로써 더욱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표 2>는 절영도에 이주한 일본인의 직업 및 인구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이주어촌의 일본인 인구가 4천 명이 넘고 어업 및 수산업 분야의 인구는 33.6%이며 공업 분야의 일본인 인구가 14.4%를 차지한다. 공업 분야의 일본인 인구가 많은 것은 영도에 일본의 어선수리 및 건조를 위한 조선 및 연관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업 및 수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는 직업의 일본인 66%가 이주한 것은 절영도에 일본인 인구가 많아 일본인 사이에 다양한 경제적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절영도는 개항이후 일본의 해군용 저탄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절영도 흑석암의 4900평의 조차약관이 1886년 조인되어 일본의 조차지로 전락²⁴⁾하는 등 제국주의 침략의 일면을 보여주며 민간인 토지를 일본인들의 매점으로 일본의 발언권이 점점 더 높아갔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고려한 일본의 토지매점과 마찬가지로 어업 및 수산업 분야의 침탈은 물론 농업, 공업 및 상업 등의 분야에서도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독립적 일본인 어촌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직업군 일본인의 이주를 계획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절영도는 부산의 다른 이주어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직승려²⁵⁾와 대좌부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주자가 가장 많았던 만큼 일본내지인 자체에서도 갈등 등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에 승려들은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수양 함양²⁶⁾에 일임을 하였을 것이다. 대좌부는 1916년 6월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7호 「대좌부 창기 취체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부산의 영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공인 유곽 지역인 ‘녹정’과 초량(草梁), 목도(牧島, 영도), 주갑(洲岬, 현 영도구 영선동)과 동부 유곽(현 영선동) 4곳이

24) 影島區郷土誌編纂委員(2003) 『影島郷土誌』 부산광역시영도구, pp.84-88.

25) 당시 일본의 종교는 ‘정치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국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을 신조로 삼을 정도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일본의 종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침탈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참여했으며 물자공출을 강권했다. 大谷派本願寺 朝鮮開教監督府(1922) 『朝鮮開教五十年誌』 東京, p.18(이정학(2016)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p.122 재인용)

26) 吉田敬市(1954) 앞의 책, p.276.

지정되었고 목도 동부 유곽은 1930년대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유곽 설치 초기에는 대좌부 업자나 창기나 유곽 출입자가 대부분 일본인이었으나, 점차 조선인의 비율이 높아졌다.²⁷⁾

〈표 2〉 절영도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戶口)

구분	어업	어부	수산 제조	수산 상업	수산 이외 각종 상업	농업 목축	각종 공업	의사	신직 승려	관 공리	대 좌부	요리 음식	기타 유업자	무직 업자	계
호	208	203	10	9	124	40	176	3	7	34	17	12	205	90	1,138
남	467	292	14	18	216	92	354	7	15	62	13	18	397	246	2,211
녀	450	153	13	10	173	78	253	6	12	37	37	17	470	294	2,003
인구 합계	917	445	27	28	389	170	607	13	27	99	50	35	867	540	4,214
인구 비율 (%)	33.6				9.2	4.0	14.4	0.3	0.6	2.3	1.2	0.8	20.6	12.8	

출전: 慶尚南道編(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尚南道, pp.101-106을 분석 정리한 것임

3.2.2 하단

1910년 하단에 이주한 일본인은 주로 어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²⁸⁾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하단 인근은 일본인 어민이 이주하기 이전의 통어행위부터 한국인 어업에 피해를 입혔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어업자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아래 〈표 3〉과 같은 직업을 가진 일본어민이 이주를 하였다. 이주자의 특징은 농업, 통조림 제조, 우편소 및 경찰관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농업이주자는 당시 일본 농민을 구제하려는 목표를 지닌 동양

27)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347(검색일:2020.10.18.)

28)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579.

척식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에 의해 조선 전체 이주어촌에 이주시켰다. 이런 이주어촌에서 조선의 소작농으로부터 수탈한 소작료는 침략사업의 자금원이 되었다. 또한, 수산물 제조업인 장어통조림을 통하여 수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계획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지리적 조건²⁹⁾을 갖추고 있는 관계로 경찰관을 파견함은 물론 전신과 전화의 기능을 갖춘 우편소를 설치하여 군사적 정보 인프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은 당시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조선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하단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戶口)

호구	어업	농업	통조림 제조	목수	잡화상	여관	교원	우편소	경찰관	합계
호	23	8	1	1	4	1	2	1	2	43
남	50	16	2	4	7	2	3	2	4	90
녀	45	18	1	4	7	2	3	1	3	84
인구 합계	95	34	3	8	14	4	6	3	7	174
인구 비율(%)	54.6	19.5	1.7	4.6	8.0	2.3	3.4	1.7	4.0	

출전: 慶尚南道編(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尚南道, pp.94-95
를 분석 정리한 것임

3.2.3 대변

대변에 일본이주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어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업·요리업의 비율이 높으며 중매업, 금대업 및 여관 등의 소비성 도시의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

29) 1894년 갑오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하단 간 군용상의 필요에서 도로를 개수할 것을 일본외무성에 상신할 정도로 하단의 지리적 조건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곳이라고 기술. 「釜山居留地와 洛東江岸 간의 道路改修件」 『駐韓日本公使館記録』(발송일 1894. 5월~9월 사이)(김승(2010) 앞의 논문, p.27 재인용)

유는 대변항은 통어선들의 왕래가 많은 소비성 항구로서 기능을 가진 수산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업·요리업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김승(2010)은 통계수치에 유곽(貸座敷營業)수치가 포함되었고 경상남도 경무부에서 1916년 6월 경남의 유곽지역으로 대변항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³⁰⁾ 대변이 절영도 및 하단의 이주어촌에 비해서 이주한 인구가 적었지만, 의사와 교원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의사는 일반의원와 치과의원 각각 2곳의 의사였으며 교원은 이주자들의 자녀들 교육상 필요했을 것이다. 취학아동의 학년은 6학년까지 있었으며 남자가 21명, 여자가 26명으로 합계 47명이었다.

〈표 4〉 대변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戶口)

호구	어업	중매업	목수	잡화상	과자상	의사	교원	이발직	탕욕	금대업	여관	요리업 음식업	합계
호	16	2	1	4	1	2	1	1	1	1	1	4	35
남	24	5	3	7	1	2	3	1	1	2	1	6	56
녀	21	5	1	8	1	2	2	1	2	3	2	10	58
인구 합계	45	10	4	15	2	4	5	2	3	5	3	16	114
인구 비율 (%)	39.5	8.8	3.5	13.2	1.8	3.5	4.4	1.8	2.6	4.4	2.6	14.0	

출전: 慶尚南道編(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尚南道, p.116을 분석 정리한 것임

3.2.4 용당

용당은 부산항을 사이에 두고 절영도와 마주보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797년 정조 21년 9월 6일 외국 범선 1척이 부산 용당포에 표착되는 등³¹⁾ 용당포는 부산 외양에서 가장 접근하기에

30) 朝鮮總督府官報 1916.6.24. (김승(2010) 앞의 논문, p.13 재인용)

31) 이학수·정문수(2018) 「영국 범선의 용당포 표착 사건」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pp.269-307.

용이한 포구였다. 이러한 포구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두어 일본인 이주어촌을 건설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³²⁾ <표 5>는 이주자의 직업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반농반어 및 농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농지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경우에 비해서도 농업적 비율이 높다. 이것은 다른 이주어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농민을 구제하려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에 의해서 땅의 구매를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소작료의 수탈과 관련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을 매입하는 등의 수단으로 일본인을 이주 및 일본 마을을 건설해 일본인의 생활 영역권을 확장시켰으며 또한 이주어민들이 조선해에서의 어로구역을 침범해 점점 확장해 나갔던 방법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다.

<표 5> 용당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戶口)

호구	어업	반농반어	농업	상업	석공	기타	합계
호	9	7	3	2	1	1	23
남	16	17	9	6	3	2	53
녀	15	19	7	3	1	2	47
인구합계	31	36	16	9	4	4	100
인구 비율(%)	31.0	36.0	16.0	9.0	4.0	4.0	

출전: 慶尙南道編(1921)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尙南道, p.112을 분석 정리한 것임

32) 일본의 이주어촌건설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예를 들면, 어청도도 군사전략상의 요충지, 태풍 등에 대한 대피항(待避港)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이에 본격적인 이주가 1903년에 시작되었으며 1911년부터 이주어촌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박중신(2011) 「어청도 어촌취락의 공간구조와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13(1), 한국농촌건축학회, p.30.

3.3 이주어촌 이주민의 경제적 활동

3.3.1 절영도(영도)

1910년 절영도 거류 일본인의 호구는 451호에 1,801명으로 대다수는 주비에 살았으며 어민들은 하루에 7십 내지 8십 척에 달하는 신선한 생선을 부산거류지 및 수산회사의 어시장에 공급했다. 이들은 부산거류민을 공동민단으로 조직하고 또한 소학교를 1907년에 신축했으며 당시 학생수는 170명이었다. 그리고 우체국은 1907년 4월에 설치되었고 11월에는 전신전화가 설치되었다.³³⁾

절영도에서의 어업종류는 팔각망(八角網), 곁망(桀網), 호망(壺網) 등을 포함하여 전체 24개 종류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일본인 이주어민과 조선어민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선과 어구수 및 어획고를 나타내고 있다.³⁴⁾ 어부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의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서 일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다양한 어류에 대한 어로활동이 실시되었고, 본 어부의 수는 조선인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어부는 망어업에 종사를 하였고, 또한 연안어업용 일본식 어선에 선장 혹은 노지로서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한편, 고용된 조선인 어부에 비해서 급료선불을 받을 수 있었고 급료도 조선인(17엔 정도)에 비해서 최고 13엔 높게 받는 등 조선인 어부를 차별 및 하급수준으로 대우 및 이용하였다. 또한 절영도에 어선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일본인 소유의 군소조선업체를 포함하여 조선업체가 무려 30여개소나 운영³⁵⁾되었으며 이들 많은 조선소는 어업 및 수산업 침탈을 위한 조선산업의 인프라로 구축되어 결과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등 제국주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33)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p.573-574.

34) 慶尙南道編(1921) 앞의 자료, pp.106-107.

35) 影島区郷土誌編纂委員会(2003) 앞의 자료, pp.312-313.

3.3.2 하단

1910년 하단에는 일본인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근의 이주자와 함께 일본인회를 조직해 심상(尋常)소학교를 설립하는 등 총호수 45호수에 인구는 110명으로 이들은 어업 및 상업 등에 종사하였다.³⁶⁾

일본인 어업자의 잉어(1,500)와 장어(8,800)와 관련된 총생산액은 10,300엔이었고 이들 어로 행위를 위해 조선인이 고용되고 일본인은 업주 및 업주의 가족으로 종사했다. 조선인 하루 월급은 15엔으로 절영도의 경우보다 낮았다. 어획된 장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중매인에게 판매되어 오사카, 부산, 경성 및 만주 방면으로 운송되었다. 어부수는 일본인이 30명, 조선인이 23명으로 조선인에 비해서 일본인이 더 많았고, 업주 대비 어선수는 각각 23개에 25개로 비슷했다. 장어 잡이와 함께 장어통조림의 수산 제조업도 실시하여 장어의 수요가 적은 시기에 제조하여 오사카로 운송하였다. 장어 통조림의 생산량은 26,880엔으로 잉어와 장어의 어업 총생산량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일본식산회사는 장어 양식장까지 건설하여 장어 양식 사업까지 실시하였고, 1921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합동의 낙동강 김어업 조합을 설치하여 김 제조의 개량증진 등 김양식업의 발달을 도모하였다.³⁷⁾ 이와 같은 합동조합 설치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쌍방이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처지에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합리적 계약관계’ 라고 기술³⁸⁾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으로 건너온 많은 일본서민이 ‘풀뿌리 식민지 지배’의 일본정책에 이용³⁹⁾되었던 만큼 이런 합리적 계약관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일본정부의 의도 하에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합리적 계약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6)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579.

37)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p.95-98 표를 참조해 분석.

38) 김승(2010) 앞의 논문, p.39.

39)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p.3, pp.123-126.

3.3.3 대변

대변에 이주한 일본어업자들의 어장은 주로 대변 앞바다 및 연해였으며 이들은 장어지예망(鰻地曳網)이나 삼치조조(鱒漕釣)에 종사하였다. 어획한 삼치와 붕장어 및 고등어의 일부는 중매인 운반선에 팔았는데 고등어의 일부는 염장용으로 처리하여 대변항에서 바로 팔았다.⁴⁰⁾ 일본어부 월급은 30~50엔을 지급받았고, 조선어부는 대변리 부근에서 고용되어 월급은 10엔~20엔으로 차별지급 받았다.⁴¹⁾

3.3.4 용당

1910년 이 지역에 이주해온 일본인의 경제적 활동은 수조망(手操網)이나 연승(延繩) 및 외줄낚시였으며 어획물은 부산으로 전송되어 판매되었다.⁴²⁾ 또한, 이들 이주어민들의 어장은 주로 용당 앞바다와 부산만, 동래군 연해 등이었으며 어민들은 멸치, 도미, 농어 및 오징어 등을 어획하였다. 어로행위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으로서 조선인을 고용하였고, 그물 어획물을 절반으로 분배하여 일부는 그물과 배에 분배하였고 나머지는 배의 종업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다. 어업과 관련된 어선 및 어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주어촌과 같이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³⁾ 한편, 용당 이주 일본인은 통척을 통해 반논반어 형태로 이주를 하였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 8반의 밭에서 농업 활동을 하였다.

40)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118 표를 참조해 분석.

41)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118.

42)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528.

43) 慶尚南道編(1921) 앞의 자료, p.113 四. 漁業 관련 표를 참조해 분석.

〈표 6〉 용당 이주어민의 부업으로서의 농업경영

지목	면적 (反)	자작 또는 소작	소작료	수확물		
				종류	수량(석)	금액
밭	8반	소작	반분	나락(糝)	18	180
	99	소작	회사규정에 의함	나락(糝)	244	2,440
합계					262	2,620엔

출전: 慶尙南道編(1921)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尙南道, p.113을 정리한 것임

3.3.5 다대포

1910년 이 지역에는 일본인의 이주자 23호로 100인이 거주해서 살았고 어호(漁戶)가 15, 의사 1, 잡화상 3, 기타 3호로 이루어졌다. 이미 1908년 4월 중순에 일본인회를 조직했고 소학교도 신축을 했다. 어업은 지예망, 호망, 연망 등으로 어로활동을 했으며 호망을 설치하는 장소는 마을 사람들 소유의 어전어장을 차입했다. 기타 차입료는 1년에 상급은 3백 엔, 중급은 2백 엔, 하급은 100엔 내외로 했으며 어획물은 부산에 전송해 쌀, 석유 등의 잡화를 매입하여 돌아가는 사람에게 판매했다.⁴⁴⁾ 1900년만 해도 일본 가고시마현 출신 어부들이 고등어 잡이를 위해 80척의 어선이 정박하기도 했지만,⁴⁵⁾ 이들 이주어민들은 1915년까지 어업활동을 진행하였고 1921년에는 이주어촌의 기능이 상실하였다.

3.3.6 기타

덕민동(민락동)에서 일본어민들은 이곳에 호망을 설치했고 인가 32호가 있었으며 지예망에 종사하는 것 외는 어장어업에 고용되어 따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암포(광안리)에서 일본인들은 창고

44)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p.578-579.

45) 慶尙南道編(1921) 앞의 자료, 부록(附錄) p.4.

를 두고서 멸치어업을 했으며, 용호에서는 일본인이 정주해 제염에 종사했다. 나칸즈쿠 사토나니가시(就中佐藤某)의 경영에 관계 해서 염전 30정을 보급했고 간척지 30정을 보유했다. 암남포(암남동)에서는 일본인 1호가 있었으며 도쿠시마현 수산조합에서는 이 장소를 어민이주지로 선정하였다.⁴⁶⁾

이상으로 부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경제적 활동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어민들은 지예망, 팔각망(八角網), 호망(壺網) 등과 같은 어로작업으로 이주어촌지역은 물론이고 부산앞바다 전체에 조선어민의 어장에까지 침범해서 어로행위를 했다. 어로작업에서도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하급수준으로 대우 및 이용하였다. 또한 멸치, 도미, 농어 및 오징어 등의 어획물을 부산어시장에 판매하는 등 유통업체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조선어민들의 판매활동을 제한시켰을 뿐만 아니라 침범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이주어촌과 관련된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 현황

1910년대는 어업조합 설립과 조합원 가입 그리고 어업조합 활동이 미미했지만, 총독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으로 어업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활동은 1920년대 들어 확대되었다.⁴⁷⁾ 즉, 당시 총독부가 어업관련 조직을 통제했고 이들 어업단체는 총독부의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조선의 식민지 운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인 이주어촌과 관련된 대표적인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어업협회를 들 수 있다. 1897년 부산주재 일본영사 이

46)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앞의 자료, pp.526-530, pp.573-580에서는 덕민동(민락동), 호암포(광안리), 남천 등 25개 지역의 부산지역 어촌의 현황과 일본인 어로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본인 이주어촌과 관련된 지역만 기술했음.

47) 최재성(2014)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람』제 47호, 조선사학회, pp.120-121.

주인 히코키치(伊集院 彦吉) 주도 아래 일본인어민 감독기관이 창설되었다. 이주인 히코키치는 1897년 2월 부산거류 일본인유지들과 일본 히로시마현 및 야마구치현 13현 출신 어업자대표와 협의하여 감독교정 및 수산단체 설립목적으로 조선어업협회를 설립하였다.⁴⁸⁾ 이 조선어업협회는 조선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일본어선을 시찰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주로 당시 어업현황을 파악하거나 또는 조선인과의 분쟁조정, 일본어민의 직면한 문제 해결 등을 처리⁴⁹⁾하면서 일본어민들을 구제하고 보호했으며 일방적으로 일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일본어민과 조선인 사이에 분쟁은 계속 되었고 조선인들의 일본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계속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조선어업협회를 1900년 5월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로 통합시키고 본부를 부산에 두어 영사의 지휘 감독아래 어민들을 통제하였다.⁵⁰⁾ 일본어민들이 연합회에 상담한 것은 조선인 간의 고충과 갈등이었으며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합회는 조선인의 불만을 제압하고 일본인 어업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결국, 이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통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1903년 4월 이 조직을 개편해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었고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합에 대한 감독은 조선제류의 부산 영사로부터 통감부의 감독으로 변경되었다. 통감부의 수산정책은 조선으로 출어한 일본어민이 정정당당하게 어로행위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장려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08년 조일어업협정이 발표되면서 조합의 업무는 조일어민의 분쟁 방지, 조선인어민을 감독하는 업무까지 확장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일본은 수산업 수탈을 가속화시켰으며 1911년 본격적인 수탈을 위해 어업

48) 김수희(2004)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20, 한국수산업경영기술연구원, pp.45-47.

49) 神谷丹路(2018) 앞의 책, pp.58-59.

50) 김수희(2004) 앞의 논문, pp.48-50.

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수산조합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된다. 조선수산조합은 조선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조선해수산조합과 달랐다. 조선해수산조합이 일본인 어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했다고 한다면, 조선수산조합은 일본어민들의 어획물을 수산시장에 판매하는 어물유통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수산물의 판로 등 간접적 지원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조선인을 조합원으로 포섭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의 수산업을 침탈해 갔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일본이주어촌과 관련된 사회단체로 부산에는 부산 수양회, 부산변영회⁵¹⁾, 부산이사청 관할 일본인 단체 등이 있었고, 결국 이들 사회단체는 일본정부의 조선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무관할 수 없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식민지 지배정책에 기여할 수밖에 없었다. <표 7>은 통감부 제 3차년보에 따라 1908년 말 당시 일본인이 부산에 조직한 각 자치단체 및 기타 지구, 호구를 표시한 것이다.

<표 7> 1908년 부산이사청 관할 일본인 단체

위치 및 명칭		민단 지구 및 거류지 구역	호수	인구		
				남	여	계
이사청 所轄 (관할)	부산 거류민단	부산전관거류지, 절영도, 초량, 부산진, 고관	5,083	10,231	9,435	19,666
	동래 일본인회	동래군 내, 동래, 금산리, 대제리	60	110	115	225
	구포 일본인회	동래군 내, 구포	65	120	100	220
	하단 일본인회	동래부 사하면의 일부	45	65	45	110

출전: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韓国水産誌』 第二輯, 農商工部水産局, pp. 437-438.

51) 박철규(2005)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56, 부산경남사학회, pp.163-206.

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함께 1906년 1월에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이사청을 운용하였다. 부산이사청은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종 활동을 보장했으며 관할지역 내 주요지역에 거류민단, 거류민회, 일본인회 등의 설립에 간섭을 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또한, 조선 식민지화를 보조하는 조선 거주 일본거류민이나 조직단체에 지원을 하는 등 실제로 초기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서서 충실히 식민정책을 수행한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를 인적이동의 매개체를 바탕으로, 통어민과 이주어촌으로 분류해서 일본이 조선으로의 어업진출과 함께 점점 일본의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해 및 조선어업을 지배해서 식민지화해가는 실태를 분석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조약들을 체결해 조선해에서 수산자원을 침탈하는 과정을 부산에 건너온 통어민의 인적이동을 바탕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통어에 대한 문제점 대두로 이주어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메이지 기 일본수산업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키자와 아키키요가 조선어장 진출은 군사 활동과 관계가 있고 일본제국주의 팽창정책과 일치한다고 말했듯이, 일본정부는 조선을 침략해 제국주의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의도 하에 일본어업자들을 조선에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본부를 두어 일본어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도 역시 러·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용식량 보급지로 조선에 이주인 어업근거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연안에는 소규모의 일본인 집단 어촌이 급속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부산에도 절영도를

비롯해서 대변, 용당, 하단, 다대포 등에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

부산의 일본인이주어촌이 건설되기까지의 지원내용과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및 경제적 활동내용 그리고 이주어촌과 관련된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 현황 등을 통해 일본어업자들이 조선에 침투해가는 양상을 이주어촌단위의 인적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영도처럼 러·일 전쟁이전부터 일본어업자들이 개인의 생계를 목적으로 이주해서 정주한 자유이주어촌과 하단, 용당, 다대포처럼 일본정부의 지시 하에 각 현 및 수산단체가 일본어업자들에게 보조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켜 건설한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 그리고 대변처럼 처음에 자유적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뒤에 각 현의 수산조합으로부터 보조 장려금을 받은 자유 및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권력을 확장시켜 조선을 침략하려는 책략이 강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총책임자를 한 명 두고 모든 분야에서 일본정부의 지도하에 움직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부산 앞바다에서의 조선인의 어장을 침범 및 확장해 식민지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어민들 간의 갈등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부산에 본부를 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는 일본어민들만의 조선인 간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해 줬으며 결국, 일본 정부의 통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쟁 시에는 이주어촌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일본으로 운반되어 군수식품조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만주로까지 수산물 수출 등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정책에서 나아가 동아(東亞) 정책의 관점에서 제국주의화하려는 의도가 짙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 김수희(2004)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20, 한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pp.46-58.

- _____ (2005a) 「어업근거지건설계획과 일본인 집단이민」 『한일관계사 연구』22, 한일관계사학회, pp.123-155.
- _____ (2005b) 「일제시대 고등어어업과 일본인 이주어촌」 『역사민속학』20, 한국역사민속학회, pp.165-190.
- _____ (2011) 「개항기 일본어민의 조선어장 침탈과 러·일 간의 각축」 『대구사학』102, 대구사학회, pp.1-26.
- 김 승(2010) 「해항도시 부산의 일본인 이주어촌 건설과정과 그 현황」 『역사와 경계』75, 부산경남사학, pp.26-27.
- 다카사키 소지 저·이규수 역(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p.3, pp.123-126.
- 박구병(1967) 「개항 이후의 부산의 수산업」 『항도부산』6권,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pp.349-360.
- _____ (1974) 「이조말 한일 간의 어업에 적용된 영해 3해리원칙에 관하여」 『경제학 연구』22, 한국경제학회, p.23.
- 박중신(2011) 「어청도 어촌취락의 공간구조와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13(1), 한국농촌건축학회, p.30.
- 박철규(2005)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56, 부산경남사학회, pp.163-206.
- 송희선(2004)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한 고찰-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3-57.
- 안영수·문성주(2012) 「일본의 어업침투와 권현망어업의 변천사」 『경영사학』27(4), 한국경영사학회, pp.79-99.
- 呂博東(1994) 「日帝下 統營·巨濟 地域의 日本人移住漁村 形成과 漁業組合」 『일본학지』14,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pp.63-84.
- 여박동(2002)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보고서, p.30.
- 이기복(2010) 「일제하 추이와 조선의 수산업 192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32, 한국역사민속학회, pp.195-228.
- 이영학(1995) 「개항 이후 일제의 어업 침투와 조선 어민의 대응」 『역사와 현실』18, 한국역사연구회, pp.154-188.
- _____ (2003) 「개항 이후 조선인 어업의 근대화 시도와 그 좌절」 『성곡논총』34(1), 성곡언론문화재단, pp.256-258.
- 이원순(1967) 「한말 제주도 통어문제 일고」, 『역사교육』10, 역사교육연구회, pp.142-171.
- 이정학(2016) 『방어진 근대의 길을 걷다-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p.122.
- 이학수·정문수(2018) 「영국 범선의 용당포 표착 사건」 『해항도시문화교섭학』2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pp.269-307.
- 최재성(2014)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람』제 47호, 수선사학회, pp.120-121.
- 慶尚南道編(1921) 『慶尚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慶尚南道, pp.93-116. 부록(附錄) p.4.
- 金在瑾(1994) 『統韓國船舶史研究』 서울대학교출판부, pp.230-237.
- 農商工部水産局編纂(1910) 『韓國水産誌』 第二輯 農商工部水産局, pp.526-530, pp.573-580.
- 影島区郷土誌編纂委員会(2003) 『影島郷土誌』 釜山広域市影島区, pp.84-88.

- 岡本信男(1965)『近代漁業発達史』日本：水産史、pp.44-45.
神谷丹路(2018)『近代日本漁民の朝鮮出漁-朝鮮南部の漁業根拠地長承浦・羅老島・方魚津中心に』新幹社、pp.57-59.
小岩信竹(2009)「日韓併合前後の大韓帝国・朝鮮における漁業法の制定と施行-明治漁業法の性格によせて-」Journal of the Tokyo University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Vol.5, pp.1-3.
新川伝助(1958)『日本漁業における資本主義の発達』東洋経済新聞社、p.37.
関沢明清・竹中邦香(1894)『朝鮮通漁事情』団団社書店、pp.7-8、p.108.
吉田敬市(1954)『朝鮮水産開発史』朝水会発行、pp.159-174、pp.247-248.

조선총독부 관보 제0367호, 釜山近海漁業狀況 (1911.11.06)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GC04206347(검색일:2020.10.18)

〈Abstract〉

Analysis of the Real Status of the Japanese Fishermen who Infiltrated Busan in Modern Times

Kong, Mi-Hee

This paper categorizes the Japanese entrepreneurs who infiltrated modern Busan into fishermen and migrant fishing villages, and analyzes the situation in which Japan was gradually expanding its fishing base and colonizing the Joseon Sea and the Joseon fishermen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fishing to Joseon.

In modern Japan, fishing-related treaties were signed in favor of Japanese companies, and the number of fishermen coming to Korea for fishing increased rapidly by invading the fishing rights of the coastal and inland waters of Korea.

And when the Russian-Japanese War broke out, a fishing base for migrants was built in Joseon as a military food supply site, and from this point on, a small group of Japanese fishing villages began to emerge rapidly along the Korean coast. Migrant fishing villages were formed in Busan as well as Yeongdo, Daejeon, Yongdang, Hadan, and Dadaepo.

The Japanese government, prefectures and fishery organizations provided subsidy incentives for these migrant fishing villages to move Japanese companies to Korea, and the Japanese people had a strong strategy to invade Joseon by expanding their power in Korea. In addition, during the war, fishery products caught in migrant fishing villages were transported to Japan and used for military food procurement.

Key words : Japanese fishermen, fishermen, migrant fishing villages, modern times, Busan, fishery products, colonialism

투 고 일 : 2020년 10월 13일

심 사 일 : 2020년 10월 18일

게재확정일 : 2020년 11월 03일